

연구부회 운영규정

제정 2008. 03. 31
개정 2014. 03. 21
개정 2015. 10. 16
개정 2016. 12. 08
개정 2017. 09. 08
개정 2020. 07. 03
개정 2020. 10. 14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 7장 및 정관시행세칙 제 6장에 의거, 연구부회 운영에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연구부회장의 선출) ① 학회장은 학회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당해 5월 중 전회원을 대상으로 차기 연구부회장 후보접수를 공고하고, 6월 15일까지 연구부회별 온라인투표를 통해 학회주관으로 차기 연구부회장을 선출한다.

② 차기 연구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연구부회 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학회 사무국에 접수한다.

③ 차기 연구부회장은 소속 연구부회 회원의 온라인투표자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.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 득표 2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.

④ 연구부회장은 선출된 차기 연구부회장을 당해 6월 20일까지 학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차기 연구부회장은 연구부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연구부회장이 된다.

⑤ 차기 연구부회장은 입후보가 없는 연구부회는 학회장, 수석부회장, 연구계부회장(연구부회협의회 위원장) 및 해당 연구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.

제 3 조 (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부회는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폐지할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장을 두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해당 연구부회장이 소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장을 임면한다. 이 경우 그

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연구부회의 운영진 구성) ① 연구부회에는 총무1인과 감사1인을 두며 해당 연구부회장이 소관 연구부회의 총무와 감사를 임면한다

② 총무는 회무를 담당하고 연구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연구부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감사의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학술발표회 논문심사 및 세션구성) ① 연구부회는 연구부회장 주관 하에 춘계·추계 학술발표회에 제출된 논문 중 해당 연구부회 소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부회장은 제 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학술발표회의의 논문발표세션을 구성하고 좌장을 선정하여 학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포상추천 등) ① 연구부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 심사 결과 우수논문에 대하여 학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② 연구부회는 제 1항의 우수논문상 후보 추천을 위하여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회에 제출·비치하여야 한다.

③ 연구부회는 “한국원자력대상”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에 기재된 업적에 대한 검증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검증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“한국원자력대상 운영규정”을 따른다.

제 7 조 (학술회 등의 개최 및 비용 총당 등) ① 연구부회는 국내·국제 워크숍 또는 학술회의(이하 “학술회 등”이라 한다)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연구부회는 학술회 등을 개최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총당하기 위하여 등록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, 등록비 등 금전의 수입, 지출은 학회명의로 은행계좌를 통하여 시행한다.

③ 학회는 국내 학술회 등의 경우 1백만원 이내, 국내유치 국제 학술회 등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준비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, 연구부회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한도액을 초과하여 준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부회장의 요청에 의거 학회 회장이 결정한다.

④ 연구부회는 학술회 등 종료 후 제행사비용(학술회 등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항목)을 정산하여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.

⑤ 연구부회는 학술회 등 정산 결과 잔액(수익금)이 발생한 경우에 수익금의 50% 이상을 학회에 조건 없이 납부·기여하여야 하며, 나머지 50% 미만은 학

회의 해당 연구부회 계정에 예치하며, 6년 내에 연구부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되 6년차 말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학회가 흡수한다.

⑥ 연구부회는 제 5항의 잔액(수익금)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단체나 국내외 학술회의 등에 기증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⑦ 연구부회에 대한 학회 이외의 외부 단체 등의 기부금 등의 관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 (다른 학술회 등의 후원) ①학회의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분야별 (Topical)학술회의에서 학회의 후원을 요청할 경우 학회 회장은 해당 연구부회장으로 하여금 후원요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검토 결과 학회 회장이 해당 후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후원할 수 있다.

제 9 조 (보고) 연구부회는 학술발표회 기간 중 전년도 활동결과보고서 및 당해 연도 활동계획서를 학회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보고회를 마친 후 1개월 내에 이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차기 연구부회장(연구부회장 임기 :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)을 2015년 11월 중에 선출하고 이후부터는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부회장을 선출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 (연구부회장의 선출) 1항에도 불구하고, 신설된 연구부회 (“원자력 열수력” 또는 “원자력안전”과 “방사선 방호” 또는 “방사선 이용 및 기기”)는 2017년 9월중 연구부회장 후보접수를 공고하고, 온라인투표를 통해 연구부회장을 선출하고, 2017년 10월 20일까지 학회장에게 추천한다. 연구부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, 차기 연구부회장직(차기 연구부회장 임기 : 2018년 9월 1일 ~ 2020년 8월 31일)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